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6년 화생방사 노후 LAN 교체사업

○ 발 주 기 관(갑)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제조사, 공급사(을) : 지니언스(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매되는 협약품목(<별표> 참조)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 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을”이 직접 또는 “을”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을”의 파트너사를 통하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 ② 위 물품 중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규격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 ④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및 협약금액 등 그를 위한 협의가 “을”의 파트너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을”은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및 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3조(협약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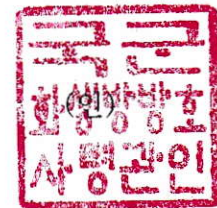
제2조에 따른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별표>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별표>의 기준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등을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거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 또는 “을”의 파트너사는 “갑”의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5월 15일

발 주 기 관 명 (갑)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제조사·공급자명(을) : 지니언스(주)



<별표>

[단위 : 원, VAT 별도]

설비명	제품사양	수량(식)	금액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정책서버)	▪ 국가정보원 CC인증(네트워크 접근 통제 유형) EAL2 등급 이상 ▪ GS 인증 획득 제품 ▪ 전용 Appliance장비(정책장비) 제공 ▪ 1,000 노드 이하 1대 ▪ CPU : Intel 3.3GHz (4 Core) 이상 ▪ Memory : 16GB / SSD : 512GB ▪ 150 노드 라이선스 포함	1	36,500,000
네트워크 접근제어 (NAC차단센서)	▪ 국가정보원 CC인증(네트워크 접근 통제 유형) EAL2 등급 이상 ▪ GS 인증 획득 제품 ▪ 전용 Appliance장비(차단장비) 제공 ▪ 150 노드 이하 1대 ▪ CPU : Intel 3.4GHz (4 Core) 이상 ▪ Memory : 4GB / SSD : 128GB	1	3,500,000
합 계			40,000,000